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8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정동만 · 김선교 · 김성원
구자근 · 엄태영 · 강민국
김용태 · 서일준 · 한기호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개발제한구역 및 같은 시·군·구(2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 다만,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의 기능 및 보호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행

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